

해남 센트럴파크 입주자 모집 공고(안)

- 본 아파트는 2018.12.1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9.01.3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전라남도 해남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내 주택이 아니며(해남군 청약과열지역 아님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 됩니다. (단, 주택형 85㎡ 이하 주택은 일반 공급 세대수의 40%만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85㎡ 초과 주택은 100%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1.31.) 현재 해남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호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 나,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임제할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2018.01.02. 모집공고 승인분 부터 적용)
-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 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은행접수 불가)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15.04.0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85㎡ 이하 주택은 ‘우주택기간, 분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적용되며, 85㎡ 초과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해당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 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aenamcentral.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의 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전매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https://www.haenamcentral.com/)를 운영하므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건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텔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건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건축 관련 설계도서는 건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관람 및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의사항 및 제반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후분양아파트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건설공정상 마이너스옵선택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일반 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접수(인터넷, 은행창구 등)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가산점수, 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02월 07일(목)	02월 08일(금)	02월 14일(목)	02월 25일(월) ~ 02월 27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당사 견본주택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 2019 - 건설주택과 - 입주자모집공고승인 - 4505호(2019. 01. 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40번지 외 4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지하1층, 지상15층 1개동 8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부지면적: 5,982㎡; 용적율: 159.69%; 주차대수: 100대; 조경면적: 1,005.38㎡
- 공급대상: 총공급 세대수 88세대

(단위:㎡)

※ 주의사항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평형타입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비율	공급 세대수	저층우선 배정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민영	2019-000036	83.9313A	83A	83.9313	24.2772	108.2085	2.2505	110.4590	68.3544	73	1
	2019-000036	81.2143B	81B	81.2143	23.9626	105.1769	2.1776	107.3545	66.1416	15	1

1.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2. 상기 세대별 대지비율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아파트와 상가의 대지면적은 연면적으로 배분하였음.
3.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단, 소수점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4.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천원)

평형타입	층	세대수	세대당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
			대지비	건축비	총공급금액	계약시	2019.03.29.	2019.05.31 .	2019.07.31 .	입주지정일 (2019.09.20)
83A	1층	4	22,316	208,684	231,000	23,100	23,100	23,100	23,100	138,600
	2~3층	10	22,316	210,684	233,000	23,300	23,300	23,300	23,300	139,800
	4~14층	54	22,316	213,684	236,000	23,600	23,600	23,600	23,600	141,600
	최상층	5	22,316	219,684	242,000	24,200	24,200	24,200	24,200	145,200
81B	1층	1	21,593	206,407	228,000	22,800	22,800	22,800	22,800	136,800
	2~3층	2	21,593	208,407	230,000	23,000	23,000	23,000	23,000	138,000
	4~14층	11	21,593	211,407	233,000	23,300	23,300	23,300	23,300	139,800
	최상층	1	21,593	217,407	239,000	23,900	23,900	23,900	23,900	143,400

- ※ 주의사항
- 신청자격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1.31.]” 현재이며,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층별 분양금액이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철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인 하여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소조정 등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등 각종 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관련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발코니 확장은 일괄적으로 기본 시공 예정이며, 발코니 확장을 미시공시 상기 분양가격의 할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납부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도금 및 잔금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기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천하여 추천결과에 따라 각 동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상기 공급대금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됩니다.
 - 사업주체가 장애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의 층을 각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잔금은 주택의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납부 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 등기는 공부정리철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본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은 회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자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의 50% 이상(대지비 제외)이 투입되고, 후분양제로써 80%이상의 분양되므로 상기 중도금 납입 일자는 준공일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받아 동·호수를 추천하며, 추천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배정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표시된 아파트는 세대별 융자금액 (전세대 세대당 8,000만원)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어 있음. 동 융자금액은 준공 이후 분양입주자에게 잔금으로 융자전환될 예정이며 입주일(입주예정일 이후 입주시 종료일)로부터 대환전일까지 기간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이자자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대출기한 20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2017년 11월 기준 대출금리 2.8%)

- 입주예정자 용자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신용상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입주예정자는 세대별 용자금액에 해당하는 잔금을 은행에서 관리하는 잔금수납계좌에 직접 입금하여야 하며, 동계좌에 입금된 입주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대출금 상환에 충당됨. (단 잔금수납계좌는 은행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잔금 수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 또는 시행사에 직접 납부할 경우 입주자 앞으로 용자전환 될 주택도시기금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아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2. 청약신청 안내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1.31.) 현재 해남군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낮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태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함. - 각 주택형태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함.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 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가능] <p>※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민영주택	해남군/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1순위	전용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40%, 추첨제60%적용)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남군,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자 / 추첨제(100%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해남군 /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신청자격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나.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라.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본인제외 ※ 유주택자(분양권 포함)인 직계존속 제외 ※ 유주택자(분양권 포함)인 배우자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일반공급 청약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 장소
일반공급	1순위	해남군 / 전라남도	2019.02.07.(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2순위	광주광역시	2019.02.08.(금) 08:00~17:30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 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 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쑤 은행 청약자) - 일반 및 특별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p>[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일반공급 모바일 청약 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일반공급 PC 청약 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일반공급 모바일 청약 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1순위/2순위 일반공급)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출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신청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정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정제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60%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남군 거주신청자가 전라남도/광주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된 예비입주자 수가 예비입주자 총수에 미달되거나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와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포 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 주택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2)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주택법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소유로 봄)
 - 공부상의 경우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니다. 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 또는 분양권(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봅니다.(단, 2007.0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정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단 제, 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정제 점수(가정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정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3. 당첨자 선정 및 호수 배정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시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19.02.14.(목)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02.25.(월)~2019.02.27.(수) (10:00~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남센트럴파크아파트 분양사무소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9.02.14 (목) ~ 2019.02.23 (토)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특별공급 제외)
	제공일시	2019.02.14 (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0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구비사항과 해당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일정 및 분양대금 납부 방법

■ 계약일정 및 장소

- 계약일정: 2019년 02 월25 일 (월) ~ 2019년 02 월 27 일(수) (3일간, 오전 10시~오후 4시)
- 계약장소: 해남센트럴파크분양사무소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		•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 사항 표시)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	
일반공급		○	• 대리 계약 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상기서류 외 위임장(당사 건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 시)
		○	•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통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경상북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 무주택 소명서류('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자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추가사항		○	• 당첨사실 소명서류(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인감증명서(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 인장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시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택전시관에 내방해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③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화와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 동(주변단지 및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타 아파트 청약 신청시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원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 계약 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고, 계약자불 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년 4월 1일 재당첨 제한 완화에 의거)
-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 추후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도록 시공될 예정이며,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세대별 용자금액 (전세대 세대당 8,000만원)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어 있음. 동 용자금액은 준공 이후 분양입주자에게 잔금으로 용자 전환될 예정이며 입주일(입주예정일 이후 입주시 종료일)로부터 대한전일까지 기간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용자이자자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대출기한 20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2017년 11월 기준 대출금리 2.8%)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9조에 준함.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계약금/중도금	광주은행	1107-020-697683	(주)태현디앤에이치/주택도시보증공사	입금시 비교란에 동·호수, 성명 필히 기재요망
잔 금	광주은행	170-127-003713	(주)태현디앤에이치	

- 지정된 계약금은 동 호수 및 계약자이름으로 아래 금융기관 계좌 송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수납 불가함)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잔금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중도금, 잔금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신한은행 지정 계좌에 온라인(무통장) 입금만이 가능하며, 입금 시에는 반드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여 입금하시기 바람, 신한은행이 아닌 타 금융기관 입금 또는 이체가 불가능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납부 영수증 발행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체료를 추가 부담합니다. 또한, 중도금 및 잔금을 연체 시는 해약 조건에 해당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에서 대출 금융기관 선정이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집단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 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대출 해당 은행 측에 필히 제반 경비(수수료, 인지대 등)를 직접 납부하여 중도금 대출금액에서 해당비용이 공제되지 않고 중도금대출 전액이 분양금 지정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은행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중도금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함)의 납부주체는 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되,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지정월 전월 말일까지만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이자납부 의무자는 별도의 약정 없이 계약자가 자동 승계 받는 것으로 하며, 입주기간 최초지정월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 미선택시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불가하며 계약자의 책임 하에 중도금을 지정계좌에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계약자 본인의 대출결격사유(대출한도 초과, 신용불량 등)와 대출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대출금 축소 및 대출이불 가능 할 경우 계약자는 본회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행 선정지연에 따라 중도금 납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 입주자 사전 점검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 점검 요령에 의거 점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입주 : 2019년 09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은 사용승인 일정을 고려 추후 개별 통보기로 함)

- 실입주일일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경 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5. 발코니 확장비 및 납부 방법

■ 발코니확장 공사비

(단위: 원, 부가세 포함)

평형타입	베란다 확장비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지정일)	
83A/ 81B	7,000,000	2,000,000	5,000,000	

■ 발코니확장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비	우리	1005-603-265684	(주)태현디앤에이치	· 입금시 비고란에 동·호수, 성명 필히 기재요망

- 발코니확장비는 입주 전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비 납입은 위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위의 입금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비는 인정치 않음.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의 성명을 필히 기재 요망.)
- 발코니확장 비용은 본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본아파트는 후분양 아파트로 모든 평형과 세대가 발코니확장 시공됨.
- 본아파트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변경하였으며, 발코니 확장비는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경도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6. 기타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구분	내용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및 본 단지의 명칭은 추후 사업주체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전쟁, 내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 동일한 사업부지 경계내에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의한 대지면적 증감에 대하여는 계약시 동의한 것으로 본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미준공시 입주주민들의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서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임(단, 임시사용은 제외) • 단지의 서쪽과 북쪽에 설치된 단지 내의 공공보행도로는 외부인원의 통행을 막을 수 없음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 일조,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분양 공고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 함 • 당 사업지의 사업주체간 시공방식등은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외부, 각 세대, 설계 등의 사항을 숙지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함.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달리 시공시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므로 신청에 착오 없기 바람 [평형환산방법: 주택형별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상위 계획변경 및 최종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 하지 않기로함)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동선 등)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과 별도 구획이 불가하며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관련 조항에 의거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 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람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 계약자는 이에 이익없이 동의함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확인바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음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함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주체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조 바람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E-stone, 천연석,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달리 시공시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바람(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건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본공사 및 하자보수시 동등 수준의 다른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건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 하며,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패턴이 있을 수 있음 • 본 홍보물 및 건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및 내부마감재는 실제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욕실젠다이, 주방상판 및 벽체, 화장대 상판 등에 사용된 천연석 및 인조대리석 등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시 건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베인이 다를 수 있음 • 욕실 벽, 바닥 수입타일 경우 수입타일 자재 특성상 커팅타일 기준으로 벽, 바닥 타일 사이즈 및 메지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공장생산자재(예:타일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됨 • 세대 아트월 타일 및 공용부 홀 등의 벽체 타일은 타일본드로 시공하며, 줄눈은 시공하지 않음
건본주택/ 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에는 83A/81B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계약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건본주택 설치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바람 • 건본주택은 분양 후(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세대내외의 위치에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스타일러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건본주택의 전시품(모형, CG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단지 외부 방음벽(하부 옹벽 포함)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개방감 확보 및 동선 개선, 레벨 조정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의 전시품(모형, CG등)은 모두 확장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입주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상이 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바람, 추후 이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바람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유상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의 모형,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등 각종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색상, 규모, 위치 및 형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광고,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유니트(덕트포함),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풍동, 위생기구, 욕실약세사리, 수전류, 실외기, 보일러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제외 품목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음 •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

구분	내용
일반사항	
단지	<p>단·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 성능, 상품개선,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계약자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 15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 및 지상 1층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 복도 포함), 단지 주변 기반시설(완충녹지, 도로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의 형태, 크기, 위치 등 설치계획은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실내 정경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크기,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방음벽(하부 옹벽 포함)은 현장 여건 및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변경 될 수 있음 • 관리사무실, 어린이놀이터,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물은 동선, 성능 개선 및 대관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로도 폭, 단지내도로선형, 시설물의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광고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중에 각종 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시공시 외관개선, 기타 현장여건에 따라 건축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외관, 축벽(문양포함), 동 출입구, 발코니양 장식물, 피로티(캐노피등),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DA급·배기장, 실외기실형태, 주차장램프 형태, 쓰레기보관소/자전거보관대 등 편의시설의 규모, 형태, 배치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 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기반시설 우·오수 배관 경로가 단지 내를 관통함에 따른 준공 후 유지보수 공사시 단지 내 일부 공사구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건축계획 변경과 조정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전후면발코니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 발코니의 경우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과정이나 실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호수, 외벽로고사인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 높이 및 단지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관청과의 심의,

	<p>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공급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부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조경 및 수공간, 시설물의 디자인과 배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과정이나 실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주민공동시설, D/A(설비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출형피뢰침(SUS재질)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함.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제 및 부속물(도어락, 말발굽 등)의 임의설치,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인·허가조건 변경, 각종 인증을 위한 변경사항 등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건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지하철, 차도, 소공원, 연결녹지, 공동주택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대칭형으로 계획되어 침실, 거실, 주방 등의 향, 조망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세대의 향, 조망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단지 내부를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입주자들의 보행혼잡, 사생활 간섭,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의해 단지내 레벨, 진출입구 위치, 주동 및 시설물의 배치 등 계획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부출입구 상가 주차장 진입 차량으로 인해 입주민 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비상차량(택배차량, 재활용품 수거차량 포함)에 의한 보행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단지에 접해있는 인접 건물에 의해 일부세대에서는 조망 및 환경권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주변 현황 및 개발계획을 확인하여야 함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및 공용부의 창호 및 난간의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옥탑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음 • 옥상 신축줄눈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주동 코어(Elev.Hall 및 계단실) 평면은 동별로 상이하며, 일부 코어의 경우 Elev.Hall 및 계단실에 외부창호가 없으므로 환기 및 채광 효율이 저하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가능한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층에는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설치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낙하물 방지 캐노피 설치에 따른 구조물에 의한 외부 조망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일부세대 부근 및 외부조경공간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설치기구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커뮤니티(관리실 등)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서는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단지에 설치 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함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보안등,조경용 조명,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시 전유부(세대부 및 공용시설 등)와 근린생활시설 간에 시설 간섭(배관경로 이용, 시설의 공용배치)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식재,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전체의 조화와 현장 여건, 외관의 개선, 인허가 내용에 따라 재료, 형태, 규격, 수량, 디자인 및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에는 수경시설이 설치되며, 이의 가동에 따른 소음, 물방울 비산, 관련비용 등 일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여하에 따라 녹조, 벌레,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환경오염 및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경식재 계획으로 인한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음
	주출입구 / 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주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중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기타	
단위 세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경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자 별도 에어컨 설치시 실별 실외기 설치 여부 및 용량에 따라 실외기 (일반적인 높이의 실외기) 최대 2대까지 설치할 수 있음 • 실내기 및 실외기 설치시 실외기실의 규격을 고려하여 실별 적용 실내기의 용량 및 대수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사시 현관 신발장에는 운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환기장치의 내부 필터는 일정한 주기로 교체해야 효율적(소음 및 성능 등)인 사용이 가능함. • 단위세대 내부 벽체 재질은 공사중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 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므로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바람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임
- 세대내의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으며, 주택형별로 확장면적이 다름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원활한 시공진행을 위하여 최종 마감재(마루, 타일, 도배 등)가 설치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않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욕실, 현관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걸림과 무관함
- 인허가 및 본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세대내 창호의 설치위치, 크기, 사양(유리사양, 창틀디자인, 손잡이, 루버형태, 재질), 색상, 디자인, 제조사, 문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예: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됨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실외기실 그릴창은 외관 디자인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음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곳 상부에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내부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가구내부에 적용된 악세서리 및 하드웨어는 본공사시 사양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상 (은 성분)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야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함
- 일부 발코니에는 우수 및 배수 드레인을 위한 입상배관 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평면구조상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함을 인지함
- 견본주택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바람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각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충간소음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대상이 되지 않음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후 계약하여야 함
- 가구금속 손잡이류의 색상은 본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수 있음
- 본 공사 시 온수분배기의 위치에 따라 드레스룸 시스템가구의 설치부위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옵션 및 평면 가변형의 경우,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 축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함
-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기둥 및 구조벽으로 인해 커튼박스의 폭이 창호보다 넓지 않고 갈게 설치되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본공사시 변경 될 수 있음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마감재 및 창호류(방화문 포함)는 감리가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설치한 경우 준공 후 이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음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각종 창호류의 설치 위치, 크기 및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출입시 태그가 불필요한 프리패스 시스템이 적용되며, 출입문 태그용 보조RF카드는 세대당 2개가 지급됨 • 주택형 및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세대내 구조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고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됨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어 사용면적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설계도서와 상이 할 수 있음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유리단간의 제조사, 크기, 형태, 재질, 사양, 접합방식, 디자인,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제조사, 형태, 사양, 재질, 높이, 크기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시공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해당세대의 면적을 확인하여야 함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보조주방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욕실에 비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세면기, 양변기,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일부세대의 경우 축벽 단열재 설치 여부에 따라 동일타입의 실외기실 내부쪽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공사시 욕실 상부에 상부세대의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 등)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실시공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바닥은 타일로 마감됨 • 입주후 인테리어공사로 인하여 본공사분에 대하여 찍힘, 파손등의 하자발생시 귀책사유는 인테리어업체에 있음으로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발 코 니 / 실 외 기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공사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의 발코니, 실외기실 천장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와 덕트가 노출 시공 됨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및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설계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현장 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람 •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등으로 예방 해야함(겨울철 실내습도가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시 결로발생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경도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사양(유리, 창틀)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을 미시공사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창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위치, 제조사 등은 실시공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전 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유닛 및 급배기덕트가 실외기실 상부에 설치되며, 장비가동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후 세대내 인테리어공사로 인한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한 하자보수 발생시,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업체에 보수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인테리어공사로 인한 하자발생건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세대내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은 현관에 설치되며, 미관상의 문제로 이의제기를 할수 없음 • 거실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됨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 난방배관 설계에 따른 거실 및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됩니다. • 단위호실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 우물천장 , 커튼박스 , PL 창호 ,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주방TV, 욕실스피커폰 등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함. • 홈네트워크 외부제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인터넷 회선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입주자 관리비에 포함되며, 전용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지 않으면 홈I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 색채, 옥상 구조물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치침변경 및 준공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주동 외부에 적용된 커튼월 록 입면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 범위, 고정 방식, 유리모듈, 색상, 디자인 등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시공사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에 따라 창호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있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단지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수림대 등)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혹은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과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5612019-101-0000700	팔십이억칠천구백이십만원정 (₩8,279,200,000)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일 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 까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25퍼센트P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 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종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종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다, 만,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입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청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 제3항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효율 기자재	적용	판형 열교환기, 급수펌프(부스타펌프), 고효율 변압기
고기밀 창호	적용	통기량 2㎡/h·㎡ 미만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세대내 거실, 침실, 주방 각 1개소)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단위세대내 현관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단위세대, 공용부, 부속동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관리실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단위세대내 각 실
절수설비	적용	단위세대내 수전류(샤워, 세면기, 양변기, 싱크수전)

▣ 주택건설공사 감리에 관한 사항

(단위: 원)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비 고
건축감리	(주)미가존종합건축사무소	208,892,090	
전기감리	(주)하늘천	26,400,000	
소방감리	(주)하늘천	23,760,000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시행자 및 시공자

구 분	회사명
시행자	(주)태현디앤에이치 (광주-주택2016-0017)
시공자	다인종합건설(주) (건축공사업 제10-0928호)

• 분양문의 전화: 061) 535-3111 / 팩스 070-8611-0068

• 당사 해남사무실 위치: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40 해남센트럴파크아파트 분양사무실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급회사로 확인하시기 바람.